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08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이훈기·김 윤·김현정  
전진숙·곽상언·황운하  
민병덕·허 영·양부남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

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불이용료”란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교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환할 것”을 “반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제8호 중 “제26조에 따른 보험에”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에 따른 보험에”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업자 중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나.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26조(보험 가입) (생략)

<신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험 가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7. (생략)
-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자

- 5.~7. (생략)
- ②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제40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 5.~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